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종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8
----------	-------

발의년월일 : 2018. 10.

발 의 자 : 신종갑, 김진천,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우리 구 장년층에 대한 은퇴 이후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대상(안 제4조)

라. 재정지원 등(안 제5조)

마.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설의 위탁 (안 제6조 ~ 제7조)

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안 제8조)

## 3. 조례안 : 붙임

## 4. 예산조치 : 필요

##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필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長年)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 연령, 경제상태, 취업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